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〇〇. 〇. 〇.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O O . O .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 O O . O . O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그런데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숙식을 해결할 형편도 되지 못하자, 피고는 위채무 중 금 5,000,000원만을 변제하면 위 채무 모두를 면제하겠다고 하여 친척으로부터 가까스로 빌린 금 5,000,000원을 20○○. ○○. △○. 소외 ●●●가입회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3. 그러나 피고는 위 금 5,000,000원을 지급 받자 위와 같은 면제사실을 부정 생 서 다시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4.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원고의 일부변제 및 피고의 면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소외 ●●●)

1. 갑 제3호증 녹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T	I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이 ○ 년(□ 조명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 재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g**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 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